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2. 19.(월) 배포 즉시

시공사 임원을 사칭하고 시공사 협력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한 시행사 이사 구속

- 사업주 최 모 씨는 하도급 대금을 임금으로 속여 간이대지급금 약 2억 6,000만원을 부정수급

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(지청장 양승철)은 **2.19.(월), 건설업자 최 모 씨**(52세)를 **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**으로써 **「임금채권보장법」을 위반**한 혐의로 **구속했다고 밝혔다.**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**부정수급은 약 2억 6,000만원**에 이른다.

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**A시행사**는 **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**로, 공사를 도급받은 **시공사 B업체**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. 이에 최 모 씨는 **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**하여 **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채무를 면탈**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최 모 씨는 먼저 **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**하여 **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B시공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**하게 하고,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**노동청에 출석하여 B시공사의 이사를 사칭하여 B시공사의 대리인 행세**를 했다. 최 모 씨는 **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**하여 **임금지급 책임을 B시공사로 돌리고**,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**출근기록(출역일보)을 조작하여 제출**하기도 했다. 이를 통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**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**시켜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.

이 외에도 최 모 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**C건설업체**에 대해서도 **그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C건설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하여**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토록 하여 **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**하기도 했다.

최 모 씨는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면서 **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근로자에 끼워 넣거나,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**으로 대지급금 수령액을 키웠다.

최 모 씨의 범행은 **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기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처음 드러나게 되었다.** 성남지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**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**되었고, **죄질**이 극히 불량하며 거주가 일정치 않아 **도주의 우려**가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.

양승철 성남지청장은 "**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제도**로서,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은 공적 재원에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기금의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**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히 대처**해나가겠다.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3과	책임자	과 장	정재훈 (031-788-1512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이광찬 (031-788-1553)
			근로감독관	최준현 (031-788-159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대지급금 제도 개요**

□ 개요

○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

□ 지급 사유 및 대상

○ **(도산대지급금)**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**회생절차 개시결정** 또는 **파산선고** 결정, 지방고용노동관서의 **도산 등 사실인정**

– **퇴직 근로자**만 대상

○ **(간이대지급금)**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**법원의 확정판결**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**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**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

– **퇴직 근로자** 또는 **저소득 재직 근로자**(최저임금 110% 미만)가 대상

□ 지급 범위

○ **(퇴직자) 최종 3개월분의 임금**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**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** 중 체불액

○ **(재직자)**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**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**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중 체불액

□ 상한액

○ **(도산대지급금) 최대 2,100만원**(연령별로 상한액 차등, 월별(또는 연별) 상한액 존재)

○ **(간이대지급금) 퇴직자: 1,000만원**(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,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) / **재직자: 700만원**